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6. 22 선고 2021가단337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헌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2. 5. 18.

판 결 선 고 2022. 6. 22.

주 문

1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21. 4. 3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5. 3. 접수 제153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망 D과 망 E의 자녀이고, C은 망 D과 성명불상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망 D과 망 E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가 마쳐졌다.

나.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드단30006호로 C을 상대로 C과 망 E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를 하였으나, 위 법원은 2021. 9. 10. 망 E이 C의 친모인 것처럼 마쳐진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,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다. 원고는 2011년경 C에게 10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2년경 30,000,000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70,000,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65120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, 위 법원은 2022. 1. 13. 'C은 원고에게 115,500,000원 및 그 중 7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9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라. 망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다가 2020. 5. 12. 사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었는데, C에 대하여 금전 채권을 주장하는 F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2877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. 10. 30. 위 법원으로부터 'C이 F에게 6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대위등기를 신청하여 2020. 12. 3. 원고, C, G에게 1/3 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마. 이후 C은 2021. 4. 30. 이 사건 부동산 중 1/3 지분을 자신의 처 H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5. 3. 접수 제1538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

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1년경에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C의 무자력

갑 4 내지 7호증, 갑 12,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으로는 원금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원고에게 70,000,000원, F에게 600,000,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, 적극재산인 부동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강원 평창군 I 임야 61488㎡ 중 1/3 지분(이하 'I 임야 지분'이라 한다)과 강릉시 J 전 674㎡(이하 'J 부동산'이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었으나, I 임야 지분에 관하여는 F의 위 600,000,000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에 의해 2020. 12. 3. 압류가 되었다가 2022. 2. 15.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185,000,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, J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K의 16,519,437원, 주식회사 L의 17,192,227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I 임야 지분과 J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적극재산으로서 재산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, C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/3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다. 사해행위의 성립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),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

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다12526 판결,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.

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C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라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택순

별지